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공직 이탈률을 줄이려는

정부 기조에 따라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의회 조례에 반영하고 발의하였습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

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

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,

공무원이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이월·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

폐지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또한,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
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
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
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
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
보완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